소유권의 발생과 그 법적효력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최 덕 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법률학부문에서는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가건설리론과 법리론을 더욱 완성 하며 경제와 관련한 법들을 비롯한 법해설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에 법질서와 준법기품을 철저히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경제관리와 관련한 법적규제사업을 옳바로 하는것은 온 나라에 혁명적인 법 질서와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결조건의 하나이다.

특히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개별적공민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를 통한 경제활동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민법에 규제된 소유권의 발생과 그에 따르는 법적효력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확립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소유권은 물건주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에 따라 물건을 법이 정한 범위에서 자유 로이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의 발생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소유권의 발생기초와 발생시점에 관한 문제이다.

소유권의 발생기초와 발생시점에 관한 문제는 소유권이 무엇에 기초하여 발생하며 그 법적효력의 발생시점은 어느때부터 보아야 하는가 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에 기초하며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의 발생은 우선 직접 법에 기초할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법적효력은 해당 법령이 발포된 때부터 발생한다.

그 대표적실례로서 국가의 법령에 기초한 국가소유권의 발생을 들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중요산업들에 대한 첫 국가소유권의 효력발생은 중요산업국유화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해당 법령의 발포시기와 때를 같이한다.

일련의 경우 법이 소유권의 효력발생시점을 특별히 정할수도 있는데 이 경우 소유권의 법적효력은 법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게 된다.

공화국민법은 임자없는 재산에 대한 국가소유권의 발생시점을 그 재산에 대한 공시 기간과 련관시켜 규제하고있다. 즉 임자없는 재산은 공시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국가소유권을 발생시킨다.

소유권의 발생은 또한 계약에 기초할수 있다.

소유권의 발생이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고 그 대상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발생하는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소유권의 대상이 특정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에 소유권이 넘어가는것으로 따로 합의보는것 을 허용하고있다.

공화국민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팔고사기계약의 체결에 이어 그에 대한 일시적인 보관계약이나 작업봉사계약이 판매자(보관자)와 구매자(보관시킨자)사이에 련속적인 과정으로이루어진 경우 법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구매자에게 발생한것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넘겨주는자에게 물건을 그대로 두고 넘겨받는자가 그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업무(경비, 관리)를 가진 경우에는 그 권한을 넘겨받는 때부터 소유권이 발생한것으로 인 정한다.

이밖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증서를 넘겨받는자에게 주면서 해당 재산을 체신, 운수기관에 부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 넘어가는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짐을 부친자는 이때부터 그 짐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그 사고에 대하여서는 짐을 넘겨받는자가 체신기관이나 운수기관의 허물에 따라 해당 책임을 지우게 된다. 다만 그 사고가 소유권을 넘겨주는자의 허물에 기초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넘겨주는자에게 책임을 지울수 있다.

우에서 소유권의 대상을 넘겨받은 때라는것은 넘겨주는자의 적법적관리를 떠나서 넘겨받는자의 적법적관리에 놓이게 되는 시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물건을 넘겨받는자의 손에 직접 넘겨주는 시기(넘겨받았다는것을 확인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물건을 넘겨주 는자는 넘겨받은자로부터 물건을 정확히 넘겨받았다는것을 인정하는 확인서(령수증)를 요구할수 있다.

또한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이외의 각이한 법률사실에 기초하여서도 발생할수 있다. 여기에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 자기 재산이나 남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리용 하는 과정에 재산이 얻어지는 경우 등이 속한다.

결혼도 가정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발생시킨다.

부부각자는 가정에 들어온 모든 재산에 대하여 자기 의사에 따라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개인소유권을 가진다.

국가소유로 되여있는 자연부원중에서 그에 대한 사냥, 채취가 허용된 대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처음으로 취득한자(처음으로 먼저 점유한자)에게 소유권이 발생한다. 실례로 사냥군이 총으로 쏜 산짐승을 놓쳐버린 경우 며칠후 다른 사람이 때려잡았다면 그 짐승에 대한 소유권은 그것을 먼저 차지한자에게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류의할 문제는 산짐승을 먼저 차지한자의 권리(선점권)는 남의 필연적인 결과물을 부당하게 가로챌수 있는것으로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즉 선점권은 필연적으로 가능한 상태에서 얻어진 경우에만 인정한다.

우의 실례에서 총으로 쏘고 추적하면 얼마든지 잡을수 있는 산짐승을 도중에서 우연히 먼저 잡은자에게는 선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은 추적을 중단하지 않은 이상 사냥군에게 발생한다. 이것은 물론 추적자가 자기의 추적이 중단되지 않았으며 추적이 계속되면 그 짐승을 잡는것이 필연적으로 가능했다는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일 사냥군이 총으로 쏘아맞혔으나 도망치는 산짐승에 대한 추적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그것을 먼저 차지한자에게 발생한다.

재산몰수도 그에 대한 국가소유권을 발생시킨다.

위법적인 행위를 의식적으로 한 경우 거래된 재산은 모두 국고에 몰수된다.

소유권의 발생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남의 재산에 자기 재산을 첨가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료로 물건을 만든 경우에 그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소유자들의 재산을 합쳐서 하나의 물건으로 만든 경우(합성물) 그것을 분리하면 그 재산적가치가 상실될수 있는것으로 하여 서로가 그 물건에 대한 개 별적인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재산의 가치에서 주되는 몫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발생 시킨다. 따라서 다른 당사자들은 해당 재산에 포함되여있는 자기의 가치몫에 해당한 보상 을 소유권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만일 매 당사자의 몫이 같거나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들모두를 하나의 소유자로 하는 공동소유권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빌려쓰던자가 빌려준자의 승인없이 빌린 물건에 다른 재산을 첨부하였는데 후에 그 첨부물을 분리할수 없게 되였다면(분리하면 원래 재산의 가치가 상실된다면) 그 첨부물에 대한 소유권은 빌려준자에게 발생한다.

그러나 합의하고 첨부하였다면 첨부한자는 첨부물의 가치를 보상받을수 있다. 만일이 경우 첨부물의 가치가 원물보다 더 크다면 그 재산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첨부한자에게 속한다. 원물임자는 다만 그 값을 넘겨받을수 있다.

여기에서 류의할 문제는 원물임자가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에는 첨부한 가치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첨부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들에게 발생시킨다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적소유와 국가적리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할데 대한 공화국민법의 기본원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물건을 첨부한 개인들은 다만 그 첨부물에 해당한 가치만을 보상받을수 있다.

그러나 같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사이에는 원물과 첨부물의 비례에 따라 소유권자를 확정한다.

합의없이 남의 재산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는 경우그 소유권은 그 재료의 임자가 가진다. 여기에서 남의 재산을 쓴자에게 허물이 없는 경우(실례로 처음에는 자기 재산이였으나 후에 그 근거가 취소된 경우)에 그 재산으로 물건을 만든자는 작업비를 받을수 있다. 이 경우 남의 재료로 물건을 만든자의 로력비가 재료로 쓰인 남의 재산의 가치보다 더 크다면 물건의 소유권은 작업자가 가지고 재료의 임자는 그 값을 보상받을수 있다.

공민이 자기 재료로 만든 물건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로 할수 없는 대상(실례로 공작기계를 조립한 경우)인 경우에 그것은 국가소유로 된다. 그리고 공민은 그에 해당한 값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법이 금지한 대상을 만든 경우(실례로 총기류의 제작)에는 그 것을 무상으로 몰수한다.

소유권의 발생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다음으로 소유권의 발생 기초와 발생시점을 정확히 확정하는것이 민사법실천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옳바로 인식하는것이다.

소유권의 발생기초를 정확히 확정하는것은 우선 소유권취득의 확정성을 명확히 밝히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소유권은 그것이 직접 법에 기초하여 발생하였는가 아니면 계약이나 그밖의 법률사 실에 기초하여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시초적취득과 계승적취득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시초적취득에서는 소유권의 발생이 법에 직접 기초하는것으로 하여 선행권리자의 권리의 적법성여부에는 관계없이 그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부터 그의 적법성이 확정되게 된다. 즉 소유권의 발생이 법에 기초하는 시초적취득의 경우에는 새롭게 발생된소유권의 법적안정성을 제한하는 그 어떠한 선행권리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실례로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이나 재산몰수에 기초한 국가소유권의 발생, 사냥, 채취를 통한 선점권의 발생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시초적취득과는 달리 계승적취득에서는 소유권의 발생이 계약(팔고사기계약)을 비롯한 일정한 법률사실들(무상증여, 상속)에 기초하는것으로 하여 여기에서는 선행권리자의 권리의 적법성여하에 따라 새롭게 발생된 소유권의 법적안정성이 서로 달리 이루어질수 있다. 실례로 훔친 물건을 구매한 경우 구매자의 소유권은 그 물건을 도적맞힌 원재산임자의 재산반환청구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소유권의 발생시점을 정확히 확정하는것은 또한 소유권의 대상으로 되는 물건이 우연사고나 어찌할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멸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그에 대한 위험부담자를 확정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여기에서 우연사고란 민사관계 당사자(권리자 혹은 의무자)들의 허물이 아닌 제3자의 허물에 기초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사유를 의미한다. 실례로 판매되는 물건을 제3자가 파손시키고 도주하여 가해자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를 들수 있다.

그리고 어찌할수 없는 사유는 민사적권리가 소멸될수 있다는것을 예견할수도 피할수 도 없었고 막을래야 막을수도 없었던 사유이다.

우연사고나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하여 발생될수 있는 재산상손해의 가능성을 민사 법률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이라고 한다.

우연사고나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소유권의 멸실이나 손상은 해당 권리당사자들에게 예견치 않았던 손해를 발생시키는것은 물론 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제3자의 허물을 따질수 없거나 불가능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이러한 경우들에 발생되는 위험부담 문제의 해결기준을 정확히 확립하는것은 당사자들사이에 야기될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법실무기관들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정확히 내리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우연사고나 어찌할수 없는 사유에 기초한 위험부담은 그 물건이 손상, 멸실될 당시의 소유권자가 진다. 팔고사기계약에서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물건을 넘겨주기전에 우연사고나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것이 손상, 멸실되였다면 그로 인한손해부담은 응당 판매자가 져야 한다. 그것은 계약대상물이 멸실될 당시 그에 대한 소유권이 아직 구매자에게 발생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소유권의 발생시점을 정확히 확정하는것은 또한 일정한 소유물(원물)로부터 새로운 리익물(수득물)이 산생되는 경우 그 리익물에 대한 소유권자를 정확히 확정하는데서도 의 의를 가진다.

우연사고나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위험부담자확정과 마찬가지로 수득물에 대한 소유권은 그것이 산생되는 순간 원물의 소유권자에게 발생한다.

팔고사기계약에서 물건을 팔고살데 대한 당사자들사이의 계약은 체결되였으나 그에 대한 현물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득물이 생기였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발생한다. 그것은 원물에 대한 현물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판매자에게 인정되기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원물에 대한 현물이전이 이루어진 후에 수득물이 생기였다면 원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미 구매자에게 발생한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도 구매자에게 발생하게 된다.

소유권의 발생시점을 정확히 확정하는것은 또한 채무자에게 채무불리행에 대처한 재 판소의 강제집행이 결정된 경우 강제집행대상의 유무를 확정하는데서도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어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결정된 경우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물건으로는 해당 강제집행이 결정될 때에 그 채무자의 소유권에 속하는 물건만이 된다. 즉 소유권이 이미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되여 소멸되었거나 남의 소유로 되여있는 재산은 현재 채무자의 점유밑에 있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유권의 발생과 그 법적효력에 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는 것은 여러가지 사유로 발생하는 당사자들사이의 소유권분쟁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 는 법률적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민사관계 당사자들의 민사적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 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는 소유권의 발생과 그 법적효력에 대한 옳바른 인식과 리해를 가지고 그에 기초하여 공화국민법의 소유권제도전반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감으로 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민사법률적으로 확고히 담보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소유권, 발생, 법적효력